

2019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경 상 북 도 지 사

①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② 사업개요

- 사업명: 2019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대상
-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①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 ※ 예시 : '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19.12월까지 신청제한, '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④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4.30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좌와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②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⑤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 등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8.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4]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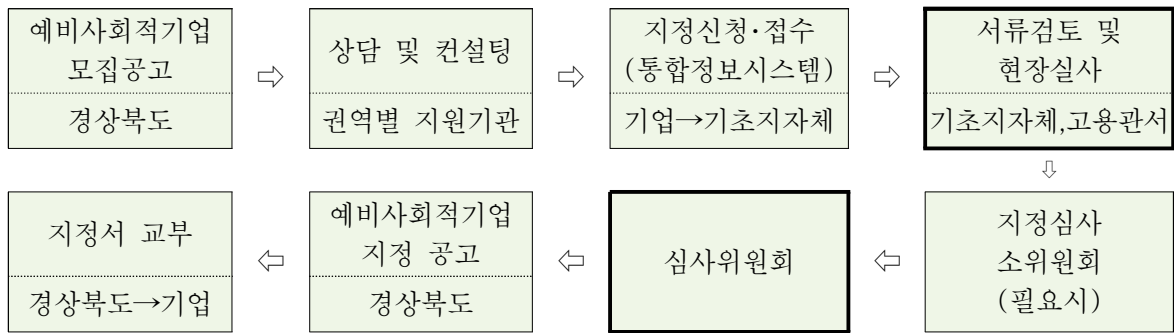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5]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참가접수
2019. 11. 6.(수) 14:00~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사)지역과소설비즈 053-956-5002

○ 지정절차



⑥ 제출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붙임 서식1의1】**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2의1】**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회적 목적 유형별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1의2~6】**
 -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실적 있는 기업만, 별표1~3 참고)
5.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 서식2의2】** 및 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 기업만)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조회, 현재 기준으로)
 - ▶ 고용보험 취득자·상실자 조회서(www.ei.go.kr 조회, 2019년 8월~10월 기준)
 -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2019년 8월~10월)
 -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㉔’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4개월의 영업활동 실적(영업 활동이 4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 사업자등록증
 - ▶ 증빙서류 예시 : 재무제표, 매출 계정별원장 등(매출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 *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
7. 정관(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은 반드시 ‘공중’을 받아야 인정(상법 상 회사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만 해당)
 - ▶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 : 상법에 따른 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상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대표자 이력서 【붙임 서식3】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서식4】
10.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서식2의3】
1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하는 경우)
12.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서류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seis.or.kr 'e-러닝' 수강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각각 수강 후 확인증 출력)
 -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5.\(금요일\) 18:00까지](#)
- 접수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인터넷)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및 서류등록
 -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 제출서류 각 1부씩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11.15. 18:00까지)

8 지정신청 결과통보

- 2019년 12월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결과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통보 예정

9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10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 054-880-2618)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경북권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부서)	전화번호
(사)지역과소셜비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053)956-5002

- (접수)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392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454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054-760-7972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054-680-6582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4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341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1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64
구미시	새마을과	054-480-6822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84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42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52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054-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47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67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33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1
군위군	경제과	054-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3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054-830-6505			

-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부서	전화번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서식 1의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여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가[], 나[], 다[])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 증빙 관련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교육 수강 확인증(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서식 1의2]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서식 1의3]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서식 1의4]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㉖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1의5]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서식 1의6]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서식 2의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가[], 나[], 다[])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규약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p>3. 사업 역량</p>	<p>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p> <p>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p> <p>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p>
<p>4. 사업 목표</p>	<p>4-1 연차별 매출규모</p> <p>4-2 고용창출 계획</p> <p>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p> <p>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p>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p>1년차</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p>2년차</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p>3년차</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서식 3】

대 표 자 이 력 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취약계층의 판단기준(확인서류)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8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56,590	3,291,501	5,144,607	5,810,309	6,116,318
60%	1,053,954	1,974,900	3,086,764	3,486,185	3,669,790
월 보험료 납부액	35,307	66,159	103,406	116,787	122,937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 '18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청년 :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박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예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 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고),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예)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의료(병원, 의원 등)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가사 · 산모 ·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3]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